

※아래 내용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下記内容を必ずお読み下さい。

본원에서 진료받으시는 외국인 환자분께

当院を受診する外国人患者様へ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진찰, 처방, 입원, 수술 등을 포함한 치료의 의료비는 1 점당 10 엔 (100%)의 단가로 계산됩니다. 2019 년 9 월 1 일부터 저희 병원에서는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매뉴얼을 참고하여, 일본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 또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발행한 재류카드(이하 「재류카드」)를 확인할 수 없는 분의 의료비는 1 점당 20 엔(200%)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 제공 체계는 일본 국적을 보유한 자 및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 국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각종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국적 및 재류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 국적자에게도 동등한 부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저희 병원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산에 대하여, 별지의 「검사요금일람표」를 참조해 주시거나 직접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주 1】 ①사진이 있는 신분증 (여권 또는 유효기간 내의 재류카드),
②일본의 공적 건강보험증(2025 년 12 월부터 마이넘버 카드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환자 오인 방지와 외국인 환자 수용 의료기관으로서의 보고 의무에 근거한 것입니다.
많은 양해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 【주 2】 일본의 법률에 따라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원 시 재류카드를 제시하실 수 없는 경우, 재류 자격이 없는 분으로 간주되어 의료비를 1 점당 20 엔(20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효기간 만료된 재류카드 또는 재류카드 미소지로 인해 의료비를 1 점당 20 엔(200%)로 결제하신 경우라도 진료일이 속한 달 내에 영수증,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공적 건강보험증(2025 년 12 월부터 마이넘버 카드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재류카드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 병원의 결제 창구에서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 【참고문헌】 「방일외국인의 진료가격 산정 방법 매뉴얼 제 2.4 판」 후생노동성
「여권 등의 휴대 (입관법 제 23 조)」 출입국재류관리청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아래 별지 서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외래)
- 입원신청서 겸 서약서(입원)

日本の医療保険制度では、診察、処方、入院、手術などを含む治療の医療費は、1点あたり10円(100%)の単価で計算されます。2019年9月1日より当院では、厚生労働省が公表するマニュアルを参考に、日本国籍を有さず、日本国内で有効な公的健康保険をお持ちでない方、または、日本の出入国在留管理庁が発行する在留カード(以下、「在留カード」)を確認できない方の医療費につきまして、1点20円(200%)にて算定しております。診療費は当院が定める算定基準に基づいて算出しておりますので、何卒ご理解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詳しい概算に関しては別紙の「検査料金一覧表」をご参照いただくか、直接職員へお問い合わせ下さい。ご理解の程、何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 【注1】 ①写真付きの身分証明書 (パスポートまたは有効期限内の在留カード)、
②日本の公的健康保険証 (2025年12月よりマイナンバーカードまたは健康保険資格確認書) の確認が必要となります。
※患者誤認防止と、外国人患者受け入れ医療機関としての報告義務に基づくものです。ご協力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 【注2】 日本の法律では、在留カードを常時携帯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ます。ご来院時に在留カードをご提示いただけない場合、在留資格がないものとして取り扱い、医療費を1点20円(200%)で計算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ございます。また、在留カードの有効期限も確認させていただきます。万が一、在留カードの期限切れまたは不携帯で1点20円(200%)にてお支払いいただいた後でも、受診日の当月内に領収書、日本国内で有効な公的健康保険証(2025年12月よりマイナンバーカードまたは健康保険資格確認書)、在留カードをご提示いただければ、当院会計窓口にて返金対応が可能です。

- 【参考文書】 「訪日外国人の診療価格算定方法マニュアル 第2.4版」 厚生労働省
「旅券等の携帯 (入管法第23条)」 出入国在留管理庁

※上記内容に関して説明を受け、十分にご理解した上で以下の別紙にご署名をお願いいたします。

- 誓約書 (外来)
- 入院申込書兼誓約書 (入院)